

7.1.부터 「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」 정식 개통

- 국세청, 2021. 7.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,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'21년 7월 1일부터 「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」를 시행합니다.
- (제도 개요)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,
 -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,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-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, 기부금단체는 법정 서식 보관·제출 의무가 면제되고,
 -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 집니다.
- (시범운영 실시)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설명, 언론·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,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여,
 - 시범운영 기간('21. 4. 1.~6. 30.)에 150천 명이 참여하고,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되었습니다.
- (납세서비스 확충)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'손택스'(모바일 홈택스)를 통해 발급·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,
 -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 가기(Link)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「국민이 편안한, 보다 나은 국세행정」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요 및 효과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·관리할 수 있고,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'21년 7월 1일부터 「전자기부금영수증」 제도를 시행합니다.
- (제도 개요)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,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*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,
 - *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
 - (신고 편의)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,
 -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는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,
 - 기부금단체는 '21년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 - (기부 활성화) 또한,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 조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2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

- 「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」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·국민 참여 등을 위해 '21. 4. 1.~6. 30.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.
 - (제도 편의기능 홍보) 가급적 많은 이용자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선안내 및 방문설명, 안내문 발송, 언론·SNS 등 온·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.
 - 주요 기부금단체(사회복지법인, 종교단체 등)에 대하여 개별 유선안내와 방문설명*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고,
 - *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소개, 시스템 발급시연, 참여 유도 및 의견청취
 - 대규모 고용법인*과 기부금영수증 기발급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, 홍보물과 사용매뉴얼을 제작·배포하였습니다.
 - * (대상)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법인, (목적) 종사직원에게 연말정산 편의사항 등 공유
 - (시범운영 참여현황)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 홍보를 실시한 결과,
 -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150천 명이 홈택스 발급시스템에 참여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650



만 건을 시범 발급하였습니다.

3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주요기능

- (실시간 조회)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·발급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고,
- (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) 세법에 규정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.
- (개인정보 보호)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*를 하였으며,
 - * (주민등록번호) 210101-*****, (휴대전화 번호) 010-****-1234, (주소)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**
 -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*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,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- * (접근경로) 홈택스 > 조회/발급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메뉴 > 휴대전화 번호 등록
- (시스템 편의기능 개선) 아울러, 시범운영 기간에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로부터 수집된 개선의견을 신속히 개선·보완하여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
 -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시 신속하게 권한을 부여하고, 기부금영수증을 대량으로 올려주기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,
 - 기부금단체의 직원 다수가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동시접속 기능도 보완하였습니다.
- (기부정보 접근편의 도모) 또한,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*에 바로가기(Link)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.
 - * 국세청 홈택스 '공익법인 공시시스템', 행정안전부 '1365기부포털'
|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조회 사이트 |

- ▶ (국세청 홈택스)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결산서류,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등을 제공
- ▶ (행안부 1365기부포털)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보* 등을 제공
 - *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정보(단체소개, 모집목표액 등)

4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납세서비스 확충

- (모바일 발급서비스) 비대면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단체가 '손택스'(모바일 홈택스)에 접속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,
 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'모바일 발급요령'을 국세청 누리집*에 게시하였습니다.

* (접근경로)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정책/제도 >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> 참고자료실

5 향후 추진방향
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혜택에 공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·제공하고,
 - 제도 활용 유인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,
 -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참고 1 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인화면

- (경로) ① 홈택스 "자주찾는 메뉴"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
 - ② 홈택스 "My홈택스"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
 - ③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/발급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

- 메인화면 메뉴별 제공기능

구분	메뉴명	제공기능
기부금단체 (5종)	①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	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
	②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	기부금영수증 여러 건을 엑셀, txt 파일로 변환 전송
	③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관리	기부자의 발급요청 승인처리
	④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목록 관리	발급목록 조회·수정·삭제 및 기부금영수증 등 법정서식 출력
	⑤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	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여부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



기부자 (3종)	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	발급목록 조회, 수정 및 삭제요청, 기부금영수증 출력
	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	기부금단체에서 미발급 시 발급신청
	③ 휴대전화 번호 등록	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등록

참고 2 -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

- (경로) 메인화면 >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
- (발급방법) 기부금단체 인적사항 확인 > 기부자 인적사항 입력(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, 사업자등록번호) > 기부내용 입력(기부일자, 금액 등) > 추가하기 > 등록하기

참고 3 -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

- (경로) 메인화면 >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
- (발급방법) 기본사항 확인 > 제출할 파일선택 > 파일검증* > 오류내용 및 검증결과 확인 > 제출하기
- * 필수기재사항(기부자 인적사항, 기부일자, 기부금액 등) 누락 여부 검증
- 오류조회 알림화면(오류건수, 오류항목 및 내용 확인 가능)

참고 4 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

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(기부금단체)
 - (경로) 메인화면 >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
 - (조회방법) 기부일자, 신청일자, 기부자명,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발급내역 조회
-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내역 조회(기부자)
 - (경로) 메인화면 > 전자기부금영수증 목록
 - (조회방법) 발급신청여부, 기부일자, 신청일자, 기부금단체 등으로 조회 가능

참고 5 - 전자기부금영수증 수정발급

- 전자기부금영수증 수정(기부금단체)
 - (경로) 메인화면 >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> 조회하기
 - (수정방법) 발급 목록에서 수정대상 선택 > 수정버튼 클릭시 알림 생성 > 수정발급

참고 6 -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

- (경로) 메인화면 >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
- (화면기능) '단체검색' 을 클릭하여 발급권한 유무를 확인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처리상태·담당자 등을 확인 가능함

참고 7 - 전자기부금영수증 손택스 시스템 이용방법

- (손택스 로그인) 인증서(공동·금융인증서), 아이디/비밀번호, 지문인증으로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시스템 이용 가능
- 기부금단체 관련 메뉴
 -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부금단체 메뉴 5가지 중 개별발급, 발급신청 관리, 발급목록 관리 등 3가지를 모바일 서비스 지원
 - * 모바일 서비스가 부적합한 일괄발급,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, 기부금영수증 서식출력 등은 미제공

메뉴명	기능	모바일 제공
①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	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	○
②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	기부금영수증 여러 건을 엑셀, txt 파일로 변환 전송	×
③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목록 관리	발급목록 조회·수정·삭제	○
④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관리	기부자의 발급요청 승인처리	○
⑤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	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여부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	×

참고 8 - 전자기부금영수증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방법

- 전자기부금영수증 부서사용자 아이디란?



- 기부금단체의 직원 다수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동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임

□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방법

- 부서별 담당자가 홈택스 '부서사용자 가입하기'에서 아이디를 신청하고,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승인한 후 이용 가능함
- *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정책/제도 >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참고
 - ①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
 - ② 신청 승인 :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 로그인 > My홈택스 > 부서사용자 관리 > 부서사용자아이디 관리(신청목록 선택) > “사용” 선택후 저장하기

참고 9 - 예상 질문 및 답변

1.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?

- ▶ 세법*에 규정된 공익법인, 공익단체 등(종전 법정·지정기부금 단체,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)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

* 법인세법 §24②·③, 소득세법 §34②·③, 조특법 §76 및 §88의4 등

2.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?

- ▶ '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'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가능합니다.

* 신청경로: 홈택스 > My홈택스 또는 자주찾는메뉴 >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(기부금단체 메뉴) >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

3.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?

- ▶ '21. 1. 1.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가능합니다.

4.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?

- ▶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·고시된 연도의 1. 1.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·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.

예) 기부일(1. 31.), 지정·고시일(6. 30.) → 6. 30. 이후 발급(기부일자 1. 31.로 기재)

5.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?

▶ 쌀,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합니다.

6. 휴대전화 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?

▶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 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합니다.

7.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?

▶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

※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 가능[참고5]

8. 여러 명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가능한지?

▶ 부서별 담당자가 홈택스 '부서사용자 가입하기'에서 ID를 신청하고,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승인하면 사용가능합니다.

9.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에서도 이용가능한지?

▶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 모두 손택스에서 시스템을 이용가능합니다. 다만, 모바일 서비스가 부적합한 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, 서식 출력 등은 홈택스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.

참고 10 - 「기부포털」 등 주요 공시시스템 바로가기

□ 기부정보 접근 편의

-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 기능 구현

|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조회 사이트 |

▶ (국세청 홈택스)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결산서류,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등을 제공

▶ (행안부 1365 기부포털)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보* 등을 제공

*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정보(단체소개, 모집목표액 등)



참고 11 - 행정안전부 「기부포털」 개요

□ 제도 개요

-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정보와 행안부 및 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를 통합 제공
 - 현행 1365기부포털을 확대 개편*,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, 모집등록·사용·결산까지 단계별 기부정보 통합 공개 추진
 - *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

□ 주요 내용

- ① 기부단체정보 통합공개
 - * 기부금단체의 국세청 공시정보, 기부모집활동 정보 등을 시각화 제공
- ②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제출 서류 전부 공개
 - * (기존) 기부금품 모집단체 소개, 모집·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
(개선) 기부 모집등록증, 모집·사용계획서, 모집·사용완료보고서, 회계감사보고서 등
- ③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의 전산화
 - * 기부금품 모집등록, 모집등록증 발급, 모집·사용완료 보고 등을 전산화
- ④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
 - * 특정 기부금단체 정보 통합검색,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, 소득공제 등 제도 안내

참고 12 -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개요

□ 시스템 개요

- 국세청 홈택스*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,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, 지정기부금 단체 등을 조회
- * (접근경로) 홈택스>세금종류별서비스>공익법인공시>공시/공개 등록하기

□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

- 대상 : 모든 공익법인(종교법인 제외)
- 기한 :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에 공시
- 주요 공시서류 :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, 재무제표, 감사보고서 등

참고 13 - 기부금영수증 관련 법령

- 법인세법

○ 법인세법 제75조의4 【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】

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

1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경우

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(중략) 100분의 5

나.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

2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: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

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"기부금영수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(이하 "전자기부금영수증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

○ 법인세법 제112조의2 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】

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부 칙 < 제17652호, 2020.12.22. >

제9조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
- 소득세법

○ 소득세법 제81조의7 【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】

① 제34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급에 산입하거나,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〔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(이하 “전자기부금영수증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“기부금영수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한 경우
 - 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(중략) 100분의 5
 - 나.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
2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: 그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

○ 소득세법 제160조의3 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】

-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“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”로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부 칙 〈법률 제17757호, 2020.12.29.〉

제14조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